저장: 신설아 / 장애인복지과 (2024-05-09 11:24:13)

문서번호	장애인복지과-596
등록일자	2024. 1. 11.
결재일자	2024. 1. 11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	관	장애인복지팀장	장애인복지과장	보건복지국장	
신설	아	심정희	정선홍	^{전결 2024.} 1. 11. 정의관	
협조					

2024년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계획

■ 사업개요

- O 지원대상
 -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
 -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이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
- O 월지급액: 1인당 3만원
- 지원인원: 9,386명(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)
- O 예 산 액 : 3,379백만원(시비 100%)

■ 행정사항

O 사회복지통합업무지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지침 준용



-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-2024년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계획
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「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수당」을 지원 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1 근거 및 추진방침

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49조(장애수당) 및 제50조(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)
- O 「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제4조 및 제5조

2 추진방침

- O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생활 안정 도모
- 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타 복지 신청시 확인 및 안내, 대상자 적극 발굴

2 추진현황

O 연도별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현황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(계획)
사업량(명)	8,300	8,800	8,800	9,386
사업예산(백만원)	2,988	3,168	3,168	3,379

O 구군별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수급자 현황

('23.12월)

계(명)	중구	동구	서구	남구	북구	수성구	달서구	달성군
8,089	260	1,261	615	677	1,313	1,140	2,260	563

※ 월 평균 지원 인원

사업개요 3

O 사업기간: 2024. 1. 1. ~ 12. 31.

O 지원대상: 저소득 중증장애인

- (성인) 장애수당 : 만 18세 이상의 재가 등록 중증장애인(종전1~2급, 중복3급)중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 수급자

- (아동) 장애아동수당 : 만 18세 미만의 재가 등록 중증장애인(종전1~2급, 중복3급)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O 월지급액: 1인당 3만원

O 지급인원 : 9,386명 (성인 8,536명, 아동 850명)

O 예 산 액 : 3,379백만원 (성인 3,073백만원, 아동 306백만원)

< 구·군별 배정 현황 >

(단위: 명, 천원)

구 분	지원인원	예 산	구 분	지원인원	예 산
Я	9,386	3,379,000	북 구	1,490	537,000
중 구	306	110,000	수성구	1,300	468,000
동 구	1,440	518,000	달서구	2,560	922,000
서 구	720	259,000	달성군	650	234,000
남 구	770	277,000	군위군	150	54,000

4 세부 추진계획

1 신청접수

- O 신청기간 : 연중 수시
- O 신청장소 :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권자 : 본인, 보호자 또는 대리인 *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
- O 구비서류
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
 - 소득·재산 신고서
 - 소득·재산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
 -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 - * 대리 신청시 :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※ 처리기한 :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(30일까지 연장 가능)
- 2 대상자 선정 :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의료)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중증장애인 : 재가 등록장애인 중(종전1~2급 및 3급 중복장애)
- 가구의 범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「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」적용
- O 소득인정액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(사적이전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, 부양비는 적용 않음)
- O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
- O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 ≦ 기준중위소득의 50%

③ 수당지급

- O 월지급액: 1인당 월 3만원
- 지급기간 :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
 - 매월 20일 지급(지급일이 토·일요일 경우 전날 지급)
 - ※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 추가 지급

- O 지급방법: 행복e음을 통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원칙
- O 지급 개시일
 - 기존 등록장애인 : 국민기초생활보장(장애수당) 신청일
 - 기초수급자(당연적용 대상)가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 : 장애등급 결정일 ※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은 전액 지급
- O 유의사항
 - 소득·재산, 장애등급 변경 : 변경된 날이 속한 달까지 전액 지급
 - 소득·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(차상위→기초) 발생시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 없이 지급결정
 - 시비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
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: 공적이전소득 산정하되 가구특성지출비용 (복지대상자 지자체 추가지원)에 포함되어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

5 행정사항

- 사후관리 등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통합업무지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안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
- O 대상자가 지급 누락되지 않도록 타 복지 신청시 확인 및 안내 철저
- O 보조금 교부 : 분기별 교부

붙임 1. 장애인복지법

2.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
붙임1 장애인복지법

- **제49조(장애수당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(補塡)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⑤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·기준·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·절차·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50조(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(補塡)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붙임2

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
- **제4조(자립생활지원 신청**) ① 대구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.)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자립생활지원 내용**)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장애인 활동지원급여
 - 2. 장애인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
 - 3.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·홍보
 - 4. 장애인 주거지워 및 개·보수
 - 5.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수리
 - 6.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
 - 7.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
 - 8.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
 - 9. 장애인 권익옹호
 - 10.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